



동아특수화학(주)

생물다양성 정책

승인자	서무 이한경 차장
제정	2025년 12월 19일
개정	최초 제정
문서 관리 번호	DGP-0109
문서 관리자	서무 이한경 차장

제 1 조 (목적)

동아특수화학(주)는 사업 운영 시 발생가능한 생물다양성 위험을 예방 및 완화하고, 산림 파괴를 방지하고자 생물다양성 정책을 제정합니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동아특수화학(주)의 모든 비즈니스 활동 영역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및 파트너사 등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 3 조 (생물다양성 기본 원칙)

- ① 당사는 2050년까지 중요 생물다양성 보전지역¹ 및 인근 지역 사업장에서 비즈니스로 인한 생물다양성 순손실 제로화(No Net Loss, NNL)를 달성하고, 점차 긍정적인 영향(Net Positive Impact, NPI)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② 당사는 사업 및 사업장에 해당되는 모든 생물다양성 보호 관련 국제 협약[세계유산(World Heritage Areas), 람사르, 국제자연보전연맹 보호구역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Category I-IV Protected Areas)], 이니셔티브 및 해당 국가, 지역의 법률을 준수합니다.
- ③ 당사는 신규 사업장 설립 또는 증설하는 경우 투자 집행에 앞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근에 중요 생물다양성 보전지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양합니다. 단, 이미 운영 중이거나 불가피한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 운영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며,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피해를 복구합니다.
- ④ 이러한 중요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의 사업 회피는 당사 사업장뿐만 아니라 가치사슬 전반에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당사는 공급업체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법적 요건

¹ 세계유산 (World Heritage Areas), 람사르, 국제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I-IV 보호구역, 국제적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 지역 (Key Biodiversity Area, KBA), 국가 지정 보호구역, IFC PS6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Performance Standard 6) 임계 서식지, HCV/HCS (High Conservation Value (HCV) and High Carbon Stock (HCS) 구역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 지역 및 생물다양성 위험 지역

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함으로써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⑤ 당사는 비즈니스 활동이 생물다양성 영향을 회피, 완화 또는 상쇄하기 위한 행동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The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NFD), Science Based Targets Network (SBTN) 등 국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생물다양성에 관한 영향 및 의존도, 위험을 연 1회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⑥ 당사는 중요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활동 회피, 최소화, 완화 또는 상쇄하기 위한 행동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완화활동을 추진합니다.

(1단계) 가치사슬 주변의 중요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확인

(2단계) 가치사슬 및 인근 지역의 생물다양성 위험이 높은 종에 대한 집중 보호 관찰

(3단계) 비즈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회피 활동 추진

(4단계)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추진: 영향 최소화 및 복원, 필요 시 상쇄

(5단계)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 인식제고 및 환경 관리 활동 현황 공개

제4조 (산림파괴 금지 기본 원칙)

① 지속가능한 환경 경영 시스템을 전개하여 '산림파괴 근절(No Gross Deforestation)'을 이행함으로써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 순손실 제로화에 노력합니다.

② 신규 사업장 조성 및 확장 시 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및 관련 국내 법령, Accountability Framework에 부합하는 자연림의 전환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사업철수 시에는 지역 법규정에 따라 산림이 포함된 녹지를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과 국가의 산림 규정과 의무를 준수하고,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산림파괴 리스크를 관리하고 완화하도록 노력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과정에서 함께 추진합니다.

제 5 조 (이해관계자 참여)

당사는 생물다양성과 산림 보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임직원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지역 문제를 이해하고 필요와 요구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공급망, 고객사, 정부, 비영리단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제 6 조 (관리 체계)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회사의 정책과 전략, 그에 따른 이행 현황을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2025. 12. 19

동아특수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전병집

